

(9)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목적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(조특법 §117① 2호의5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□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 목적 주식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증권매매업자 ○ (거래) 주권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의 조성을 위한 주식 양도(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한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시장조성전용 주식계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에만 적용 ○ 적용기한: '17.12.31.

<개정이유> 개별 주식선물·옵션시장의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'15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